

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

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••• 2023/6/19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과 일반신고의 비교

개념구분	일반적법신고	성실신고확인
업무정의	매년 5월 31일 마감일까지 적법신고	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 인증 확인신고
확인방법	자기신고 + 또는 외부조정신고	외부회계사 · 세무사의 적격인증확인 (사전 세무실사의 개념 : 계정별 적격증빙 확인 입증)
적용범위	대부분 사업자 해당	농업 등 15억 이상, 제조업 등 7.5억 이상,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
복수업종	업종별 세무조정	업종별로 성실신고 적용 판단 (각각 성실신고)
확인비용 공제	해당없음	직접사용금액의 60% ≤ 총액 120만원 한도
의료비, 교육비	필요경비 아님	세액공제 : 지출액×15%
성실확인수수료	세무조정수수료만 적용	세무조정 수수료 + 성실확인수수료 (한도액까지 200만원 내외 적용)
미실행 가산세 등	해당없음(과소신고 20%)	미수행시 산출세액×5% 매출액의 0.02%중 큰 금액
사후관리	부적법 세무조정시 세무조사(징계가능)	부적격수행시 세무대리인 필수 징계